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504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0나974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50421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최지윤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휴텍 앤 율석 담당변호사 김한목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4. E

5. F

6. G

변론 종결 2020. 9. 10.

판결 선고 2020.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G은 H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16. 11. 11. 접수 제17436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H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8. 2. 접수 제1152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 접수 제1152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21901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 접수제11528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5. 23. 접수 제695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과 H의 남편 망 I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 위 법원으로부터 "H과 망 I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9,259,966원 및 그 중 777,752,931원에 대하여는 2013. 4. 21.부터, 894,862,846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각 2013.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16,644,189원에 대하여는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382(본소), 2013가합15065(반소)].

나. H, 망 I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I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8.24. 사망하였다. 망 I의 상속인으로는 처 H, 자녀들인 J, 피고 B가 있었는데 J, 피고 B는 2014. 10. 20.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이를 인용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4.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977호). 항소심 법원은 2015. 6. 11.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H은 원고에게 1,424,462,988원 및 그 중 76,414,876원에 대하여는 2013. 4. 2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894,862,846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2013. 7. 17.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42,543,266원에대하여는 2013. 7. 18.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64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766(본소), 2014나2012773(반소)].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6. 30.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근거하여 망 I 소유인 서울 성동구 K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M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3. 작성한 배당표 중 M에 대한 배당액 1,564,829,813원을 64,829,813원으로 감액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230호). 이에 대해 M이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9. 12.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이의를 기초로 하여 2020. 1. 13. 1,5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1 소유였는 데, 아래와 같은 각 등기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구분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	2016.8.2. 제115281호	2014.8.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B
		2016.8.2. 제115282호	2016.7.28. 증여	피고 C
		2018.12.28. 제219010호	2018.11.28. 매매	피고 D
	근저당권설정	2016.8.2. 제115283호	2016.7.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E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9.5.23. 제69512호	2019.5.2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99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F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권설정	2016.11.11. 제174365호	2016.10.31. 설정계약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6.10.31.부터 만30년 지상권자 피고 G

바. H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에 대하여 1,646,702,79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로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H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각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바, 피고 B은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기로 한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참조).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와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여야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 I가 2014. 8. 24.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이 처 H, 자녀들인 J, 피고 B이었던 사실, J, 피고 B이 2014. 10. 20.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 이를 인용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4. 12. 1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2766(본소), 2014나2012773(반소) 사건에서 H이 2015. 2. 26. 망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면서 J, 피고 B의 상속포기심판서를 제출하고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 H, J, 피고 B이 2016.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피고 B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H이 2016. 7. 29.경 피고B의 대리인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법무사 N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무효임에 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H은 피고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한 무렵인 2016. 7. 29.경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1. 22.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에 대하여 1,646,702,79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로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고,이를 기초로 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H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게 각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바,

H에게,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H에 대하여 2020. 1. 13. 기준 1,646,702,794원(= 원금 1,424,462,988원 + 지연손해금 222,239,80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가 2020. 1. 13. 1,5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이는 원고의 H에 대한 채권 원금 1,424,462,988원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20. 1. 13.자 배당금이 원고의 H에 대한 채권 중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2020. 1. 13.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채권 1,646,702,794원이 존재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대위권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G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H에 대하여 1,646,702,79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로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고,이를 기초로 한 피고 G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H을 대위하여 피고 G에게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바, 피고 G은 H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